

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장학규정

제정	2001. 8. 1.	제335호
개정	2002. 4. 3.	제367호
	2002. 7. 6.	제382호
	2004. 9.21	제436호
	2010. 3. 5.	제522호
	2014. 7.31.	제65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(사회체육대학원, 교육대학원을 포함한다.)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교외의 장학기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장학금의 구분)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 장학금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

①교내 장학금의 종류는 각호와 같다.

1. 성적우수 장학금
2. 외국인전형자 장학금 <개정 2014.07.31>
3. 봉사장학생 장학금 <개정 2014.07.31>
4. 특별장학금
5. 경제적가사곤란자(학비감면액의 30%이내 선발) <신설 2014.07.31>
6. 현직교원 장학금 <신설 2014.07.31>

②교외 장학금은 외부 장학재단, 공공기관 또는 단체가 장학 대상자를 지명하거나 선정 의뢰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.

제4조(교내 장학생의 선정 기준) ①교내 장학생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 다만, 특별장학생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 주임교수가 추천하며 수혜기간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 <개정 2014.07.31>

②장학생 선정자격 기준 및 장학금 내역은 별표와 같다.

제5조(교외 장학생의 선정) ①교외 장학기관에서 해당 인원과 조건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②교외 장학기관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.

제6조(신청 및 절차) 교내 장학금의 수혜 희망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아래 각 호 중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.

1. 장학생 추천서 <개정 2014.07.31>
2. 외국인등록증(외국인전형자 장학금 신청자) <개정 2014.07.31>

제7조(신청자격의 제한)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생은 당해 학기에 성적우수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

1. 복학, 재입학 및 편입학생(신입학생은 입학금만 장학금 대상이 됨)
2. 근신 이상의 징계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3. 기타 학칙 등을 위반한 자

제8조(수혜기간의 제한)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4학기(사체,교육대학원은 5학기), 박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 할 수 없다.

제9조(지급시기) ①교내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초로 한다.

②교외 장학금의 지급은 교외 장학기관이 정하는 시기로 한다.

제10조(지급방법) ①교내 장학금중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 방법은 해당 금액의 학비 감면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기성회계 장학금은 학비감면장학생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.

②교외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

제11조(지급중지)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.

1. 학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을 때
2. 장학금 신청 절차 또는 신청 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때

제12조(기타 사항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 (2001. 8. 1. 제335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2. 4. 3. 제367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제3조 및 제6조는 2002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2. 7. 6. 제382호)

이 규정은 200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4. 9.21. 제436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4. 9.21. 제436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0. 3. 5. 제522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2014. 7. 31. 제653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 <개정 2014.07.31>

교내 장학생의 선정 기준 및 장학금 내역

장학종별	수혜 자격 기준	장학금 내역
성적우수장학금	성적우수자 30%이내인 자[논문학기 원생 중 직전학기(박사과정의 경우 4학기) 평균평점이 3.8이상인자의 수업료를 면제한 후 재학생 면제]	재학생 : 수업료 면제 신입생 : 입학금 면제
외국인전형자장학금	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.8이상인 자	기성회비 50% 면제
봉사장학생 장학금	대학원에서 학사 또는 수업실형 등의 업무 보조 원생	별도 계획에 의함
특별장학금	대학원의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데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대학발전에 기여할 자(선발시기는 입학학기 다음 학기인 2학기에 선발하고, 특별장학금 지급 계속 여부는 직전학기 평균평점 3.8이상인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)	수업료 및 기성회비 : 면제
현직교원 장학금	교육대학원 원생 중 현직교원	기성회비 15% 감면